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화재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

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6월 3일
- 회부일자 : 2011년 6월 8일

3. 제안이유

- 무분별한 논두렁 및 밭두렁 소각에 의해 산불 오인출동이 급증함에 따라 출동소방력 저하가 심각히 우려됨.
- 전체 산불의 26%가 논두렁 및 밭두렁 소각부주의에 의해 발생
- 「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」 제2조(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) 제1항 각 호에 신고의무를 명문화 하여 산불 발생 원인인자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산불예방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제2조제1항제7호를 신설
“ 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하의 논·밭두렁”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「소방기본법」 제19조제2항제6호의 위임 규정 근거하여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논두렁 및 밭두렁 소각시 신고의무를 명문화 하여
- 화재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소방력 낭비를 차단하고, 산불 원인인자를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예방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
-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